

日本 電氣用品 取締法에

의한 登錄節次 解說

1. 日本電氣用品取締法의 概要

가. 日本電氣用品取締法의 制度

日本電氣用品取締法은 電氣用品의 제조, 판매 등을 규제함으로서 粗悪한 電氣用品에 의한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電氣用品의 범위, 甲種 電氣用品 및 乙種 電氣用品의 定하는 외에 甲種 電氣用品 製造事業者的 등록 및 형식인가(형식승인), 乙種 電氣用品 제조 및 수입사업자의 사업개시 신고, 판매 및 사용의 제한, 指定試驗機關에 관한 사항, 電氣用品의 제조 및 수입사업자 등에 의한 보고의 정수, 工場検査, 電氣用品의 제출, 개선 명령, 수수료 등에 대하여 定하고 있다.

나. 電氣用品의 범위

法의 규제대상으로 된 電氣用品은, 同法 第2条에 「일반용 電氣工作物(電氣事業法 第66条第1項에 규정된 일반용 電氣工作物을 말함)의 부분이고 또한 이에 접속하여 사용되는 기계기구 또는 材料로서 政令으로 定한 것」 및 「携帶發電機로서 政令으로 定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電氣用品은 甲種 電氣用品과 乙種 電氣用品으로 분류하고 규제내용을 2 단계로 하고 있다.

그 분류의 정의는 「甲種 電氣用品이란 구조 또는 사용방법, 기타 사용상황으로 볼 때 특히 위해 또는 장해의 발생이 될 우려가 많은 電氣用品으로서 政令으로 定한 것을 말하며, 乙種

電氣用品은 甲種 電氣用品 이외의 電氣用品을 말함」으로 되어 있다. 그 세부품명은 第1表(354品目) 및 第2表(143品目)와 같다. (表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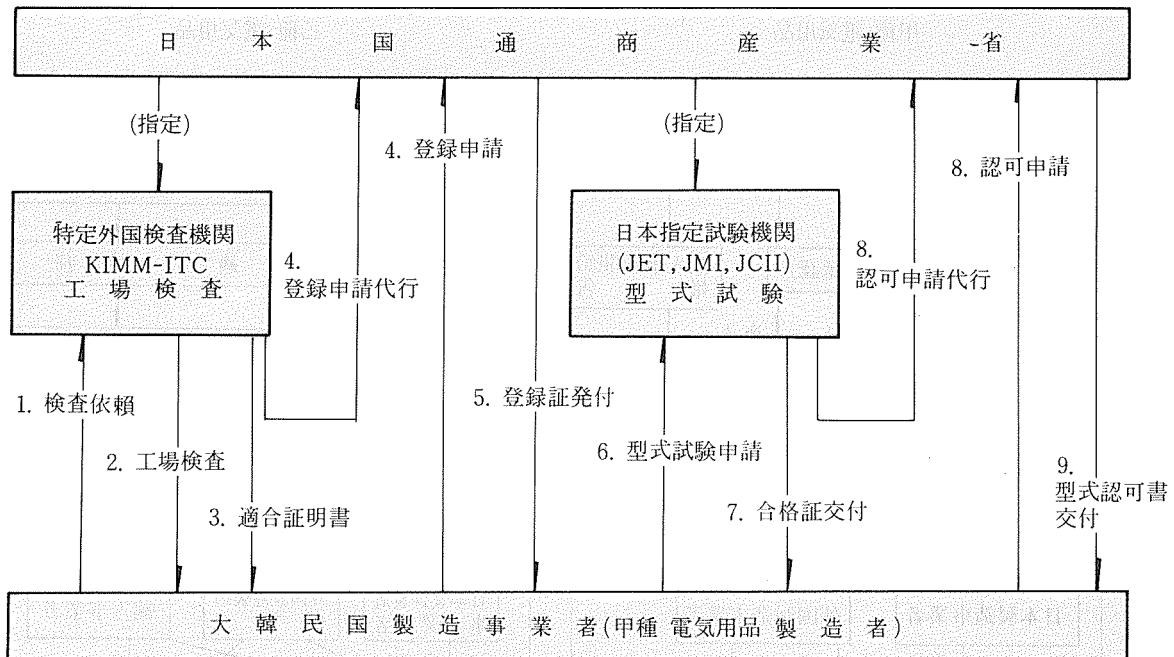
다. 日本電氣用品取締法의 改正 要旨

諸外國의 요청, GATT協定上의 요청에 따라 國際貿易摩擦의 해소를 위한 日本市場 개방의 일환으로 同法의 일부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外國製造事業者에 대한 등록, 형식승인의 직접 신청을 認定(法改正 1983年 8月 시행)
- 2) 동일 제품에 대해서, 輸入事業者間의 認定型式認可를 認定(法改正 1983年 施行)
- 3) 外國製造事業者の 登錄時に 工場検査를 特定外國検査 機関이 代行 가능(1984年 5月 정비)
- 4) 型式承認試驗 등에 대해서 外國試驗機關의 試驗成績書를 認定
 - ① 契約方式(1982年 12月 정비)
 - ② IECEE - CB 制度(1984年 4月 가입)
 - ③ 通商產業省 大臣에 의한 指定方式(1986年 3月 정비)
- 5) 技術基準에 IEC規格의 채택(1986年 11月 이후 현재 56規格)

라. 日本電氣用品取締法의 規制에 대한 체계

電氣用品取締法의 規制에 대한 체계도는 다음과 같다.



日本電気用品取締法의規制에 대한 체계도

마. 甲種電気用品에 대한 日本의 輸入規制 내용

(1) 『の 표시가 없는 것을 수출할 경우 日本의 輸入事業者が 『の 표시가 없는 甲種電気用品을 수입 판매코자 할 때에는 다음의 수속을 하여야 한다.

(가) 型式認可

日本의 輸入事業者は 수입 판매코자 하는 甲種電気用品(輸入事業者が 수입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 通商産業省令으로定한 형식구분에 따라서 製造事業者별로 通商産業大臣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다른 輸入事業者が 이미 동일 형식구분 및 동일 제조사업자에 대해서 型式認可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사실에 대한 確認을 받아 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나) 技術基準의 적합 의무

輸入事業者が 型式認可를 받은 甲種電気用品을 수입 판매할 경우, 그 電気用品은 通商産業省令으로定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이 의무에 위반될 때에는 개선 명령이나 업무

정지 명령이 적용되고 다시 이러한 명령을 위반하면 型式認可를 취소하고 벌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다) 表示의義務

型式認可를 받은 輸入事業자는 그 認可에 따른 형식의 甲種電気用品에 소정의 표시를 붙여야 한다.

표시의 내용에 대해서는 電気用品別로 法으로 정해져 있다.(施行規則 第24条 別表第7)

(2) 『의 表示가 부착된 것을 수출할 경우

日本의 輸入事業者が 『의 표시가 붙은 甲種電気用品을 수입 판매코자 할 때에는 다음의 수속을 하여야 한다.

• 事業開始報告

外國登録製造事業者が 다음(3)의 수속에 따라 承認을 받은 型式의 甲種電気用品에 소정의 표시가 붙은 것을 수입할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만으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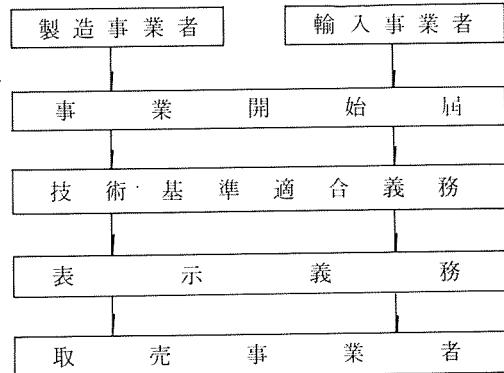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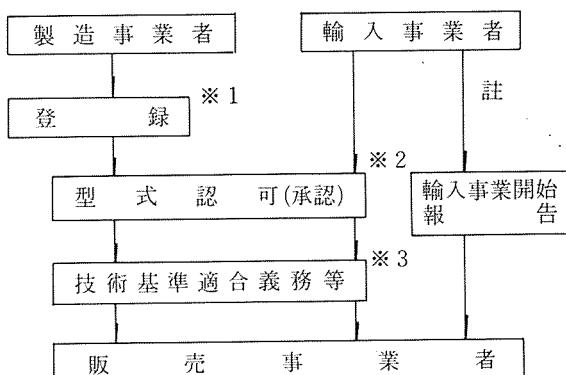
다만, 輸入事業자는 그 표시가 정당히 부착된 것인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3) 外國製造事業者에 대한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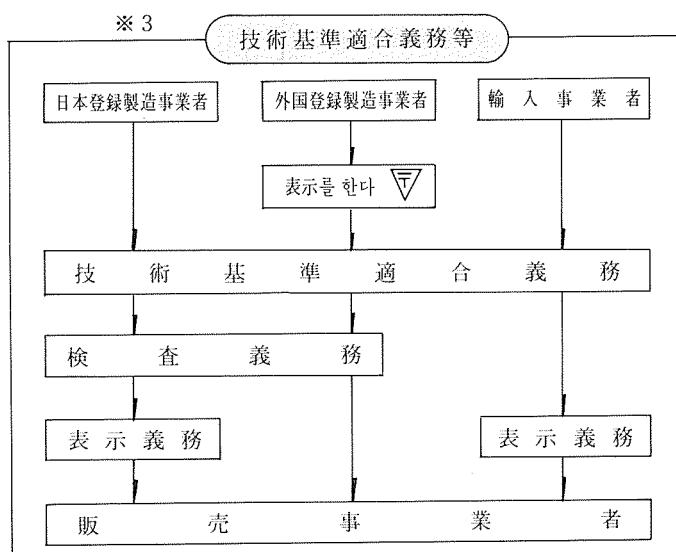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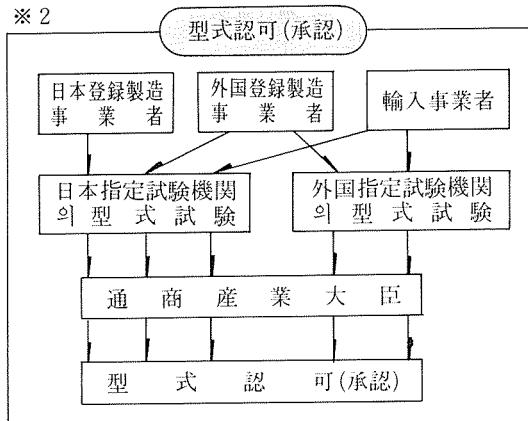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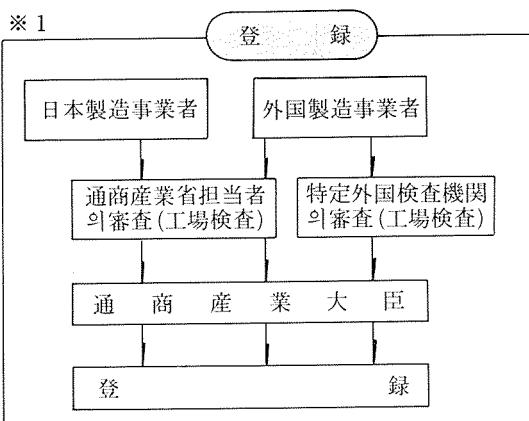
(가) 製造事業者の 등록

甲種 電気用品

乙種 電気用品



註：外国製造事業者가 型式承認을 받고 所要의 表示를 한 것을 輸入하는 者는 報告만으로 된다。



電気用品取締法의 体系図

日本에 輸出하고자 하는 甲種 電氣用品의 제조사업을 할 때에는 제조하고자 하는 電氣用品에 속하는 사업구분(施行規則 別表 第1)별로 通商產業大臣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등록기준은 通商產業省令으로 定한 특정 제조설비와 특정 검사설비가 省令으로 定한 기술기준(施行規則 第6条 및 第7条)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때 通商產業大臣의 지정을 받은 特定 外國 檢查機關(韓國機械研究所 附設 企業技術支援센터)의 적합 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시에 通商產業省의 담당관이 行하는 현지공장 심사는 생략된다.

(나) 型式承認

등록을 받은 製造事業者가 日本에 輸出하고자 하는 甲種 電氣用品에 대해서는 通商產業省令으로 定한 형식구분(施行規則 第14条 別표 第4)에 따라서 通商產業大臣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시의 요건은 시험용의 電氣用品이 通商產業省令으로 定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시험은 法에 따라 지정받은 (財) 日本電氣用品試驗所, (財) 機械電子検査検定協会, (財) 日本寫真機光学機器検査協会에서 한다. 承認有効期間은 電氣用品의 종류에 따라 3年, 5年, 7年으로 定하고 있다.(施行令 第1条 別表 第1) 또한 형식구분을 벗어나지 않고 仕様을 변경한 製品을 제조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도 通商產業省令으로 定한 技術基準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하여야 한다.

(다) 技術基準의 適合義務

登錄製造事業者가 型式承認을 받은 甲種 電氣用品을 제조할 때에는 그 電氣用品이 通商產業省令으로 定한 技術基準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이 의무에 위반될 때에는 特定製造設備, 特定検査設備, 檢查方法 등에 대하여 개선 명령을 적용하거나 1年 이내의 기한으로 제조, 판매사무의 정지명령이 적용되기도 하고, 다시 이러한 명령에 위반하면 型式承認이 취소되고 악질적인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는 한편 벌칙이 적용된다.

(라) 檢查의 義務

登錄製造事業者は 제조하는 甲種 電氣用品에 대해서 기술기준에 적합여부를 검사하여 그 검사기록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3個年間 보존하여야 한다.

(마) 表示의 義務

型式承認을 받은 登錄製造事業者は 승인된 甲種 電氣用品에 ④ 마크 및 소정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표시의 내용은 電氣用品別로 定해져 있다.(施行規則 第24条 別表 第7) 만일 이 표시가 없으면 日本輸入事業者가 형식인가를 받아야 한다.

바. 乙種 電氣用品에 대한 日本의 輸入規制 내용

日本에 輸出하고자 하는 乙種 電氣用品에 대해서는 日本輸入事業者를 경유하여야만 한다.

(1) 乙種 電氣用品 輸入事業者에 대한 규제 내용

(가) 事業開始의 신고(届出)

乙種 電氣用品의 輸入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通商產業大臣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届出)하여야 한다.

가. 성명, 명칭 및 주소, 주인인 경우는 대표자명

나. 該當 乙種 電氣用品의 종류 및 구조

다. 該當 乙種 電氣用品 製造事業者的 성명, 명칭 및 주소

(나) 技術基準의 적합의무

輸入事業者가 乙種 電氣用品을 수입 판매할 때에는 그 電氣用品이 通商產業省令으로 定한 技術基準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이 義務에 위반할 경우에는 개선명령이나 業務停止命令이 적용되거나 벌칙이 적용된다.

(다) 表示의 義務

輸入事業者は 수입 판매하는 乙種 電氣用品에 ⑤ 마크 및 소정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表示内容은 電氣用品別로 定해져 있다.

사. 販売事業에 대한 규제

電氣用品 販売事業者는 所定의 표시(④마크 또는 ⑤마크, 기타 表示事項)가 없으면 電氣用品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가 없다.

2. 外国製造事業者の登録

가. 外国製造事業者の 등록 절차

甲種 電気用品을 제조하고자 하는 者는 電氣用品取締法 第17条 2의 规定에 의하여 등록을 받아야 한다. 이 登錄制度는 製造事業者가 앞으로 안전한 電氣用品을 계속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등록신청에는 소정의 製造設備와 檢查設備를 보유하고 있는가와 제조과정에서 어떠한 검사를 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첨부서류가 있어야 한다.

그 신청절차는 신청서류를 日本通商産業省에 직접 제출하여 通商産業省의 담당관이 현지공장 심사를 하는 <그림-1>의 경우와 通商産業大臣의 지정을 받은 特定 外國検査機関(韓國機械研究所 附設 企業技術支援센터)의 현지공장 檢查를 받고 特定 外國検査機関이 발행한 적합증명서를 첨부하여 通商産業省에 제출하는 <그림-2>의 경우 등의 두 방법이 있다.

(1) 事業区分마다 등록

法 第17条의 2에는 「製造事業区分에 따라 등록을 받아야 한다」라고定해져 있다. 이 사업구분이란 電氣用品取締法 施行規則 別表 第1에 기재된 20区分(第3表 참조)으로 비교적 유사한 전기용품으로서 공통 제조설비와 검사설비를 필요로 하는 電氣用品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이 사업구分别로 등록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電気ストーブ를 제조하기 위해서 「電熱器具製造事業」의 事業区分으로 등록을 받은

製造事業者が 추가로 電気다리미를 제조할 때에는 다시 등록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이 製造事業者が 電氣세탁기를 제조할 때에는 다른 事業区分인 「交流電動機 등 応用機器類 製造事業」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2) 登錄申請書를 提出하는 곳

申請書는 「日本 通商産業省 資源에너지厅 公益事業部 技術課 電氣用品室」에 제출한다.

다시 말하면 신청서에 特定 外國検査機関의 적합증명서를 첨부하느냐에 따라서 그 절차가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가) 適合證明書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1) 登錄申請書를 技術課 電氣用品室에 제출한다.

2) 通產省 직원에 의한 공장심사 실시일의 약 1주일전에 등록수수료(1事業区分 47,000円+通產省 직원 1人분의 출장비)를 수입인지로 電氣用品室에 지불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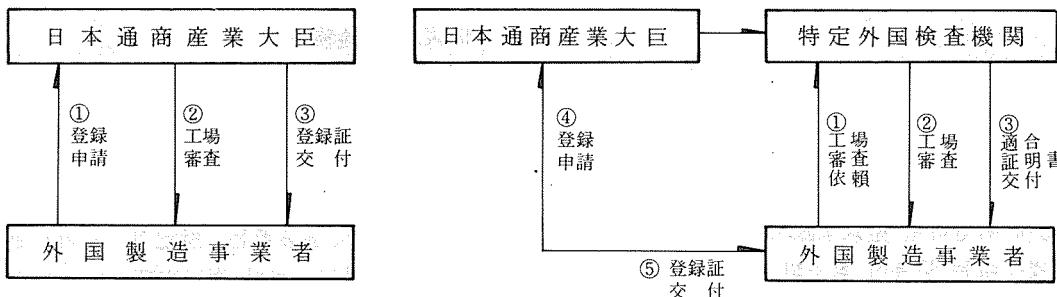
(나) 適合證明書를 첨부하는 경우

1) 特定 外國検査機関에 工場検査를 의뢰하여 製造設備 및 檢查設備가 通商産業省令으로 定한 技術基準에 적합하다는 適合證明書를 받는다.

2) 上記 適合證明書를 첨부한 登錄申請書類를 技術課 電氣用品室에 제출한다. 이 때 登錄手数料(1事業区分마다 9,600円)를 수입인지로 電氣用品室에 지불하여야 한다.

(3) 登錄申請에 必要한 書類

(가) 外国製造事業者 登錄申請書(施行規則 第3条 様式第1)



<그림 1>

<그림 2>

- 1) 事業区分
- 2) 製造工場의 명칭 및 소재지
- 3) 特定製造設備의 명칭, 성능 및 数
- 4) 特定検査設備의 명칭, 성능 및 数
- (나) 서약서
- (다) 위임장
- (라) 첨부서류
- 1) 電氣用品名
- 2) 定 格
- 3) 製造方法의 概要
- 가) 製造工程 나) 製造工程의 보충 설명
- 4) 檢查方法의 概法
- 가) 受入検査 나) 中間検査
- 다) 完成品検査
- 라) 他人에게 위탁하는 檢査
- 5) 材料, 部品의 구입계획
- 6) 下請加工 外注計画
- 7) 工場 또는 事業場의 부근 略図
- 8) 製造코자 하는 甲種 電氣用品의 写真·構造図
- 9) 日本 国内の 連絡처 住所, 姓名, 電話
 番号
- 나. 登録申請에 필요한 서류와 기재요령
- (1) 登録申請書의 작성방법
- 가) 用紙의 크기는 JIS規格 B5로 할 것
- 나) 수입인지는 消印하지 말것
- 다) 日本語로 기재할 것
- 라) 주소, 성명은 日本語와 原語를併記할 것
- 마) 연락난에는 담당자의 소속,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할 것.
- 이것은 서류의 미비점이 있어 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나 제품에서 사고가 발생시에 연락하기 위한 것이다.
- 라) 第3項, 第4項의 特定製造設備와 特定検査設備는 별지에 기재하는 것이 좋다.
- (사) 신청서는 3通을 작성한다.
- 1) 通商産業省의 제출용..... 1通
 - 2) 特定 外国検査機関의 제출용..... 1通
 - 3) 신청자의 보관용..... 1通
- (2) 事業区分 ○○製造事業
- ※ 事業区分 一覽 参考

事業区分 一覽

事 業 区 分	
1	(1) 고무系 絶緣電線類 製造事業 (2) 合成樹脂系 絶緣電線類 製造事業
2	(1) 金属製 電線管類 製造事業 (2) 金属製 可撓電線管 製造事業 (3) 金属製 電線管類 附属品 製造事業 (4) 合成樹脂製 電線管類 製造事業 (5) 合成樹脂製 電線管類 附属品 製造事業
3	(1) 系 ピズ類 製造事業 (2) 包装 ピズ類 製造事業 (3) 温度 ピズ 製造事業
4	配線器具 製造事業
5	電流制限器 製造事業
6	小形 単相 変圧器類 製造事業
7	各形 3相 誘導動機 製造事業
8	電熱器具 製造事業
9	(1) 交流電動機 等 応用機器類 製造事業 (2) 裝飾用 電燈器具 製造事業 (3) 光源応用 機械器具 製造事業 (4) 電子応用 機械器具 製造事業 (5) 携帯発電機械 製造事業

다. 製造開始後의 諸注意

(1) 甲種 및 乙種 製造事業者, 輸入事業者は 製品이 항상 技術基準에 적합한가에 주의하여야 한다.

甲種 電氣用品을 제조하는 사업자는, 제품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당국의 공장검사가 있어도 제시할 수 있게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2) 등록사항이나 신고사항에 변경이 생길 때에는 30일 이내에 變更届를 제출할 것.

신고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製造事業者の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될 경우

(나) 甲種 電氣用品을 제조하는 工場 또는 事業場의 명칭 및 소재지가 변경될 경우

(3) 日本電氣用品取締法 및 関係法令集을 비치 同法令集을 비치하고 이것을 참조하면 편리하고, 技術基準 적용에 대한 차오를 방지할 수 있다.

(4) 登錄證, 申請書 등의 보존

登録申請書의 写本, 登錄證, 型式承認 등은

用品名마다 정리하여 잘 보존하여야 한다.

라. 外國登録製造事業者の 변경 신고
등록부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은 다음
에 登錄事項, 特定製造設備 및 特定検査設備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法 10条의 규정에 따라서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變更届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通商産業省 資源에너지厅에 제출하여
訂正을 받아야 한다.

電氣用品 関係管庁 및 試験検査機関 소재지

官廳・試験検査機関名	電 話	所 在 地	電話番号
通商産業省資源에너지厅 公益事業部技術課電氣用品室	03(503)7079	日本東京都千代区ガツミガタ 1-3-1	100
韓国機械研究所 附設企業技術支援センター 電気試験研究部	02(863)0611 (구내 675)	서울特別市九老区九老洞 222-13	152
(財)日本電氣用品試験所	03(466)5121	日本東京都渋谷区代代木 5-14-12	151
(財)機械電子検査検定協会関東事務所	03(416)0111	日本東京都世田谷区砧 1-21-25	157
(財)日本写真機光学機器検査協会	03(263)7111	日本東京都千代田区一審町 25	102

P. 75에서 계속

건은 만족한가?

- 7) 성형품이나 런너의 취출시간을 줄일 수 있는가?
(자동낙하 방식이나 완전 자동운전엔 불가한가?)
 - 8) 성형 불량에 대한 현상 파악은 실시되고, 충별 및 그 대책이 수립되어 실시되는가?
 - 9) 노즐 터치부로부터 수지가 새는 것은 없는가?
(기타 기계의 정상가동을 방해하는 요인은 없는가?)
 - 10) 종업원 전체가 원가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가?
- 다. 일반 관리사항
- 1) 원재료의 입고 및 보관상태는 양호한가?
 - 2) 사용하다 남은 재료는 재사용하기 쉬운 상태로 구분되어 보관하고 있는가?

- 3) 검사방식 및 한도 견본은 납품처와 합의되어 실시되고 있는가?
(불합격된 Lot의 처리는 명확한가?)
- 4) 냉각수 순환방식은 적정하고 냉각시간을 줄이기 위한 부대설비 및 노력을 하고 있는가?
- 5) 금형설치 시간의 단축을 위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가?
- 6) 기계 고장시간의 단축을 위해 고장발생부품의 유보품을 갖고 있는가?
- 7) 수지교체 및 색상 교환시 손실을 최소로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 8) 안전대책 및 안전교육은 실시되고 있는가?
- 9) 생산부 자재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 10) 불량률, 가동률, 효율 등이 구체적인 숫자로 표현되어 있으며, 누구나 알 수 있는 목표가 있는가?